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 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 정의 신설 등 >

■ 김예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710호)

2026. 9.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 정의 신설 등(안 제2조제38호, 제33조제4항·제5항 및 제33조의2제4항·제5항 신설 등)	3
※ 참고자료	11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예지의원 외 10인

나. 발 의 일 : 2026. 4. 29.

다. 회 부 일 : 2026. 4.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표된 저작물을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배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 향유와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의 정의가 모호하고, 대체자료 변환의 기초가 되는 저작물의 디지털 형태 제공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대체자료를 변환하려는 경우 종이 교재나 영상물을 일일이 재작성·편집해야 하는 한계가 있음. 최근 회계사를 꿈꾸던 시각장애인이 시험 준비 과정에서 점자 교재를 스스로 제작하는 데 과도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어 결국 시험 도전을 중단한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는 등 디지털 형태 자료의 부재가 장애인의 진로 선택과 학업 지속을 실질적으로 제약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를 정의하고,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해 공표된 저작물을 대체자료로 변환하려는 자는 저작권자 등에게 그 저작물을 디지털 형태로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

할 수 있도록 하여 대체자료 제작에 필요한 디지털 형태의 자료를 적시에 확보하여 장애인이 학습 교재, 자격시험 준비 자료 등을 신속하게 변환·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8호, 제33조제4항·제5항 및 제33조의2제4항·제5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 정의 신설 등(안 제2조제38호, 제33조제4항·제5항 및 제33조의2제4항·제5항 신설 등)

개정안은 ‘장애인들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의 정의를 신설하고, 시각장애인등 또는 청각장애인등을 위한 대체자료를 제작하려는 자가 저작재산권자 등에게 해당 저작물을 디지털 형태로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요청을 받은 자에게 이를 지체 없이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법률 제21336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7. (생략) <u><신설></u>	법률 제21336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7. (현행과 같음) <u>38. “장애인들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란 공표된 저작물등에 포함된 문자·영상·음성·음향·그림·도면 등을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변환한 것을 말한다.</u>
제33조(시각장애인등을 위한 복제 등) ① (생략) ② 시각장애인등의 복리증진을 목적	제33조(시각장애인등을 위한 복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현행	개정안
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해당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u>공표된 저작물등에 포함된 문자 및 영상 등의 시각적 표현을 시각장애인들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u> 이를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③ 시각장애인과 그의 보호자(보호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3조의2에서 같다)는 공표된 저작물등에 적법하게 접근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의 개인적 이용을 위하여 <u>그 저작물등에 포함된 문자 및 영상 등의 시각적 표현을 시각장애인들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u> 이를 복제할 수 있다. <신설> <신설>	----- ----- ----- ----- -----<u>시각장애인들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를 제작하여</u>----- -----. ③ ----- ----- ----- ----- -----<u>시각장애인들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를 제작하여</u>-----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시각장애인들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를 제작하려는 자는 해당 저작물등의 저작권자 또는 그 저작물등에 관하여 이 법에 따라 복제·배포·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 자에게 해당 저작물등을 디지털 형태로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저작물등을 디지털

현행	개정안
④ (생략) 제33조의2(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① (생략) ② 청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해당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u>공표된 저작물등에 포함된 음성 및 음향등을 자막 등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u> 이를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③ 청각장애인 등과 그의 보호자는 공표된 저작물등에 적법하게 접근하는 경우 청각장애인 등의 개인적 이용을 위하여 <u>그 저작물등에 포함된 음성·음향 등을 자막 등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u> 이를 복제할 수 있다. <신설>	<u>형태로 제공받은 자는 시각장애인등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u>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제33조의2(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를 제작하여----- ----- -----. ③ ----- ----- -----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를 제작하여-----.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를 제작하려는 자는 해당 저작물등의 저작재산권자 또는 그 저작물등에

현행	개정안
<신설> ④ (생략)	관하여 이 법에 따라 복제·배포·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 자에게 해당 저작물등을 디지털 형태로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저작물등을 디지털 형태로 제공받은 자는 청각장애인등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현행법¹⁾은 시각장애인등 및 청각장애인등의 저작물 접근권을 보장

1) 「저작권법」

제33조(시각장애인등을 위한 복제 등) ① 누구든지 공표된 저작물을 시각장애인과 독서에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시각장애인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점자법」 제3조에 따른 점자로 변환하여 복제·배포할 수 있다.

② 시각장애인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해당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등에 포함된 문자 및 영상 등의 시각적 표현을 시각장애인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③ 시각장애인등과 그의 보호자(보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3조의2에서 같다)는 공표된 저작물등에 적법하게 접근하는 경우 시각장애인등의 개인적 이용을 위하여 그 저작물등에 포함된 문자 및 영상 등의 시각적 표현을 시각장애인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체자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2(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① 누구든지 공표된 저작물을 청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한국수화언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한국수어로 변환할 수 있고, 이러한 한국수어를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② 청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해당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등에 포함된 음성 및 음향 등을 자막 등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등에 대해서는 공표된 저작물에 포함된 문자·영상 등의 시각적 표현을, 청각장애인등에 대해서는 음성·음향 등의 청각적 표현을 각각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현행법상 ‘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대체자료 제작의 기초가 되는 저작물을 디지털 형태로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종이 교재나 영상물 등을 일일이 재작성·편집해야 하는 등 대체자료 제작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의 소요가 필요한 상황임.

일례로, 한 시각장애인이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련 점자교재가 없어 수험서를 시각장애인 대체자료로 준비하다가 결국 포기한 사례가 언론에 보도²⁾되기도 하였음.

이에 개정안은 ‘장애인들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를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변환한 자료로 정의하고, 시각장애인등 또는 청각장애인등을 위한 대체자료를 제작하려는 자가 저

③ 청각장애인 등과 그의 보호자는 공표된 저작물등에 적법하게 접근하는 경우 청각장애인 등의 개인적 이용을 위하여 그 저작물등에 포함된 음성·음향 등을 자막 등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청각장애인 등의 범위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체자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점자 교재도, 시험 지원도 없다…시각장애인 회계사 ‘0명’ 현실”, 뉴시스, 25.12.31.

작재산권자 등에게 해당 저작물을 디지털 형태로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요청을 받은 자에게 이를 지체없이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이 입법화되는 경우, 저작물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및 이용편의가 제고되고 이에 따라 장애인 인권의 제고까지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개정안 논의 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지나치게 넓은 “장애인들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의 정의로 인해 저작권 제한의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음.

개정안은 “장애인들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를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변환한 자료”로 장애 유형의 구분없이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어 저작권 제한의 범위가 지나치게 과도해질 우려가 있음.

둘째, 개정안이 저작권자 등의 재산권 및 영업활동의 자유에 과도한 제한이 될 우려가 있음.

개정안은 저작권자의 재산권 제한을 넘어 저작권리자에 디지털 파일의 제공 의무 및 지체 없는 이행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또한 동 이행 의무를 위해서는 저작물을 디지털 파일 형태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저작권리자에 저작물의 디지털 파일 전환·보관에 관한 추가적인 의무까지 지우는 것으로, 저작권리자의 재산권 및 영업활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임.

셋째, 개정안의 디지털 파일 제공의무 등이 이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 저작권을 신탁하는 경우 저작재산권자 등은 해당 단체가 되나 해당 단체는 권리만을 관리할 뿐 저작물을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아 디지털 파일 제공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장애인들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의 정의가 장애 유형의 구분없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저작재산권 제한의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고, 저작재산권자 등에게 디지털 형태의 저작물을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권리자의 재산권 및 영업활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 정도가 클 수 있으며, 저작물을 직접 보유하지 않은 권리자는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외국인의 저작물에도 동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이 적용되어 해당 저작물의 국외 저작재산권자들에게 디지털 파일 제공 의무가 부여될 경우 우리 저작권법의 역외적용 문제와 통상 마찰 발생 우려 등

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376

협회명 (의견제출일자)	의견 주요내용
한국문학예술 저작권협회 (‘26. 5. 12.)	• 저작재산권자 또는 권리를 가진 자를 찾는 노력과 어려움 및 디지털 형태의 저작물 유출 리스크 해소를 위해 국립장 애인도서관을 통해 자료 제공하도록 수정 필요
한국방송작가 협회 (‘26. 5. 12.)	• 협회에서는 저작권만 관리할 뿐 저작물의 디지털 원본 파일 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단순히 권리자라는 이유로 디 지털 자료 제공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따라서, 디지털 자료 제공 의무는 실제로 자료를 보유한 자 가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에서 부담하도록 하며, 자료 유출 보안 조치, 목적 외 이용에 대한 책임 등을 명확히 정할 필 요가 있음.
한국음악 저작권협회 (‘26. 5. 13.)	• 저작재산권자 또는 복제·배포·공중송신 권리자에게 디지털 형태 제공 의무를 직접 부과하나, 신탁단체는 저작물을 보유 하고 있지 않아 실제 저작물 보유자에 별도 요청 필요 - 즉, 실제 저작물 보유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조항 추가 필요 • 한편, 대체자료 제작에 제공하기 위한 자료의 별도 생성·추 출·가공·검수·보안처리 등에 행정적·재정적 부담 우려 - 자료 제공 업무수행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 지 원 및 보상금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실비 보전 장치 마련 필요